

위탁판매계약서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운용하는 침부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을”이 판매대행(이하 “위탁판매”라 한다)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판매를 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범위)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2.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3.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4.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5.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6.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
7.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3조(업무협조) ① “갑”과 “을”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과 해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상황, 기타 위탁판매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나 의견을 서로 긴밀히 교환하는 등 성실히 협조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상품의 소유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등 기타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 또는 교환함에 있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이하 총칭하여 “자본시장법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갑”과 “을”은 위탁판매와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정하는 방법(예탁결제원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팩시밀리(FAX), 전자전송(e-mail) 및 컴퓨터 통신망 등)을 통해 상호 교환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유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준수의무) ①“을”은 판매업무를 자기의 책임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고 투자자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상의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의무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③“을”은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당해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감독기관의 명령,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관련법령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상호간에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판매창구의 분리) “을”은 영업점 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다는 문언이 표시된 판매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최소 1명 이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7조(판매회사의 부당행위 금지) ①“을”은 “을”에 인수한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입을 “갑”에게 요구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 이면계약 등에 따라 “갑”에게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대한 명령, 지시, 요청을 하는 행위 등 “갑”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갑”의 집합투자재산운용전략 수립 및 집행 등에 간섭할 수 없다. ②“갑”은 “을”, “을”의 계열회사(계열회사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 및 자본시장법 제84조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광고물의 심사) ①“을”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활동을 위하여 투자 광고를 할 경우에는 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편 제3장 투자광고]” (이하 “투자광고규정”) 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회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투자광고규정” 제2-42조제1항 각호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 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을”은 제1항의 투자광고물 심사절차를 거쳐 적격승인을 받기 전에는 투자 광고를 할 수 없다.

제9조(수익률의 표시) “을”은 집합투자상품의 광고선전물에 수익률을 표시할 경우에는 협회의 “투자광고규정”에서 정하는 수익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장상 의무기재사항) “을”은 “갑”의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증권저축통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회사의 명칭
2.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 상품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문언
3.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분배되는 실적배당 상품”임을 표시하는 문언

제11조(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은 서면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③집합투자증권의 추가설정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개별 계약 없이도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추가약정) ①본 계약과 관련된 업무의 방법 등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추가사항에 대해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갑”과 “을”이 첨부된 위탁판매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첨부된 추가 또는 변경할 집합투자기구명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첨부된 집합투자기구 전체에 미친다.

제13조(세부사항) ①본 계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세부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매각 및 환매절차, 장표사용 등은 세부지침에 의한다.

③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4조(책임)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할법원) “갑”과 “을”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합의한 법원을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집합투자규약 등의 제공) ①“갑”은 관련법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집합투자규약을 “을”의 영업점에 비치하여 투자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투자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투자설명서 및 자산운용보고서를 관련법령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갑”은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4월 14일

집합투자업자 (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회사 (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은행장 하 춘 수(인)

* 첨부 : 위탁판매 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1부. 끝.

첨부

위탁판매 대상 집합투자기구 목록

1. 도이치 DWS 프리미어 글로벌테마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도이치 글로벌 올에셋 증권 투자신탁 2호(주식-재간접형)
3. 도이치 글로벌 커머더티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009년 4월 14일

집합투자업자 (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판매회사 (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은행장 하 춘 수

위탁판매 세부업무 협약서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9년 4월 14일자로 체결된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에 따른 세부업무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갑"과 "을"의 집합투자증권 위탁판매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서와의 관계)①이 세부업무협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서에 정의된 용어는 세부업무 협약서에서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

③계약서 및 세부업무협약서의 일부 조항이 상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업무협약서가 우선한다.

제3조(대행표시) "을"은 "갑"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위탁판매함에 있어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광고선전물, 기타안내문 등에는 "갑"이 집합투자증권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임을 명시한다. 다만, "을"이 대내적으로 사용하는 장표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탁판매 범위) "을"이 위탁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목 및 판매한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집합투자기구의 판매 및 설정) ① "을"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납입한다.

② "을"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의뢰하는 때에는 "을"은 설정일자,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설정좌수 및 금액 등을 증권예탁결제원 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갑"은 동 시스템을 통해 "을"이 입력한 사항을 확인한 후 설정의뢰 당일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동 시스템을 통한 "갑"의 승인 후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설정내역을 정정할 수 없으며,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 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을 승인할 경우 "을"은 집합투자증권 설정대금을 지정한 자금결제 계좌를 통하여 결제한다.

제6조(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해지) ① “을”이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자산의 매각에 의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을”의 환매요청에 응하고 “을”은 이를 환매 청구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본 조항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갑”이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기구의 일부 해지 시, “을”은 증권예탁결제원 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시스템을 통해 일부 해지를 청구한다. 동 시스템을 통한 “갑”의 승인 후 “을”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내역을 정정할 수 없으며,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자금결제) “갑”과 “을”은 설정, 해지 등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정하는 지정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당일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상호 합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기준가격의 산정 및 통지) ① “갑”은 해당 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산정방식, 평가방식, 수수료 및 기준가격 산정관행에 따라 기준가격을 계산한다.

② “갑”은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을 “갑”이 정한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매일 영업시간 개시 이전까지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의 통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지연사유와 통보가능시간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보수)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수는 “을”이 위탁판매하는 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당해 집합투자규약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갑”은 제1항의 판매보수를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위탁회사보수 인출일에 “을”에게 지급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판매관련비용) ① 집합투자증권의 위탁판매 관련비용은 “을”이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공) ① ‘갑’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하여 “을”이 투자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자의 확인을 표기한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재산 편입내역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장부, 서류를 “갑”과 “을”이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② “갑”은 “을”이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과 관련한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규약,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③ “갑”은 “을”의 요청 시 “을”에게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 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범위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갑”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회계기간이나 투자신탁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그와 관련된 결산내역이나 상환내역 등을 “을”에게 통지한다.

⑤ “을”은 “갑”의 요청 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현황에 관한 정보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12조(계약해지의 효과)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갑”과 “을”간의 위탁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을”이 본 계약해지일 전에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이 전부 해지되거나 신탁원본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계약서 및 본 세부업무협약서의 내용 중 당사자간 및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규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3조(업무처리) 본 세부업무 협약서와 관련한 업무처리는 각각 “갑”과 “을”을 대리하는 위탁판매관련부서장 또는 해당업무부서장 명의로 한다.

제14조(기타) ① “을”은 위탁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익률이나 “갑”에 관한 기타사항에 관하여 과장하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등 기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따른 손해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을”이 판매한 집합투자증권의 운용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을”은 집합투자증권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③ 본 세부업무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사안은 관계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별도 협의에 의해 처리한다.

제15조(협약서의 변경)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협약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은 본 협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의 쌍방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4월 14일

집합투자업자 (갑)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33번지
도이치자산운용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용 일

관매회사 (을)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
주식회사 대구은행
은행장 하 춘 수

